

#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강석주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18호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인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등은 금연구역이 실내 공간으로만 한정되어 있  
어,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성장기 아동·청소년들이 시설  
인근의 실외 공간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위험이 상존  
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은 청소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강화된 금연구역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이에 해당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실외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 금연교육 및 홍보의 실효성을 높여 청소년 흡연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는 담배의 정의를 「담배사업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내 용어의 일관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들을 삭제하여 조례의 간결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기존에 실내 공간으로 한정되어 있던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인 키즈카페, 키움센터, 지역 아동센터의 금연구역을 실외 공간으로까지 확대하는 부분으로 이들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실외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시설 이용 아동과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협력을 명문화하여 학교 내 금연교육 및 홍보 활동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여 건강 보호를 강화하고, 동시에 금연 환경 조성에 대한 행정적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를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